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종류 신설	결산	변동 성	법 개정
1	미래에셋차이나과창업증권투자신탁(주식)	○	-	-	-
2	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-	-	○
3	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-	○	-	-
4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1 호	-	○	-	-
5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6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7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8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9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10	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11	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○	○	-
12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 1 호(H-JPY)(주식)	-	○	○	-
13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	-	○	○	-
14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-	○	○	-
15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○	○	-
16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3 호(주식)	-	○	○	-
17	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18	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-	○	○	-
19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 호(H)(주식)	-	○	○	-
20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 호(UH)(주식)	-	○	○	-
21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22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23	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24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25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26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27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28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29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30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31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32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○	○	-
33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	-	○	○	-
34	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35	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 5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
36	미래에셋퇴직플랜 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37	미래에셋퇴직플랜 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38	미래에셋퇴직플랜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39	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40	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41	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42	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43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44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45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46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47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48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49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50	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-	○	○	-
51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52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53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54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55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56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57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4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 예정일: 2020년 12월 18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클래스 신설 및 가입자격 추가

펀드명	신설 클래스	판매 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(%)	환매 수수료(%)
미래에셋차이나과창판증권투자신탁(주식)	종류 C-P	0.80	-	-
	종류 C-Pe	0.40	-	-
	종류 C-P2	0.64	-	-
	종류 C-P2e	0.32	-	-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종류 C-e	0.65	-	-

[참조 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
종류 C-P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

종류 C-P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
종류 C-P2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종류 C-P2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
종류 C-e	온라인 가입자

3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no.	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1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 30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3.65	5.93
2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3	2	13	21.26
3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4.14	7.69
4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	3	8.38	13.87
5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4.7	9.44
6	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1	18.48	26.99
7	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5	4	4.33	7.46
8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자신탁 1 호(H-JPY)(주식)	3	3	11.87	14.18
9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자신탁 1 호(UH)(주식)	3	3	11.13	13.33
10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3	3	10.44	11.51
11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3	2	13.97	22.77
12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 3 호(주식)	3	2	13.84	22.65
13	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1	18.37	26.99
14	미래에셋머머징마켓리더증권투자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2	2	-	18.88
15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자신탁 2 호(H)(주식)	2	1	23.63	26.52
16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자신탁 2 호(UH)(주식)	2	1	23.43	25.03
17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3	7.42	10.74
18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4.6	7.81
19	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1.89	6.52
20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3	6.53	10.34
21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1	18.27	28.16
22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64	9.93
23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1	18.49	27.02
24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1.52	2.53
25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49	4.28
26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3.71	6.25
27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	3	7.65	12.43
28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5	5	1.01	1.27
29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자신탁 2 호(주식)	3	2	13.97	22.22
30	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22	2.3
31	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 5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5	5	4.22	4.55
32	미래에셋퇴직플랜 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1.5	2.54
33	미래에셋퇴직플랜 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49	4.28

34	미래에셋퇴직플랜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3.73	6.27
35	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1.45	2.44
36	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29	3.97
37	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3.38	5.73
38	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4.53	7.57
39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3	2	12.65	20.23
40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	3	6.97	11.35
41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4.54	7.61
42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1.52	2.49
43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54	4.34
44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3.78	6.37
45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	3	7.63	12.74
46	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6	6	0.33	0.4
47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/1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4.54	8.11
48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2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6	3.39
49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3	2	13.73	16.53
50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5.06	6.28
51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3	2	13.96	22.21
52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	3	7.66	12.39
53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4	5	8.29

4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44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 3 <생략></p> <p>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6 <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3 <좌동></p> <p>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6 <좌동></p> <p>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</u></p>

		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